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례의 내용에 맞게 자구 및 직명을 수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직명 개정 (부지사 → 행정부지사)
- 자구 수정 (위원장의 명을 → 위원장 및 관계국장의 명을)

첨 부

-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한다

제18조중 “위원장의”를 “위원장 및 관계국장의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	정	안
<p>제6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- 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자료제출요구등)①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.....</p> <p>②..... 행정부지사.....</p> <p>.....</p> <p>③ 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자료제출요구등)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위원장 및 관계국장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	